

불안시설(불안묘·불안탑·불안담) 설치(변경)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· 개인, 가족, 종중·문중 : 10일 · 종교단체, 법인 : 30일
명칭	[] 개인 또는 가족불안묘(탑·담) [] 종중·문중불안묘(탑·담) [] 종교단체불안묘(탑·담) [] 법인불안묘(탑·담)		
소재지	지번	지목	
면적	불안시설기수/안치구수		
설치연월일	시설물설치 (법인 제외)	[] 비석 [] 상석 [] 기타 석물 [] 없음	
설치변경	설치변경사유	[] 시설 [] 설치·관리인	
	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		
설치자	성명/종중·문중, 종교단체, 법인명	생년월일/법인허가번호	
	주소/법인 등 주소	자택/법인 등 전화	
관리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불안묘(탑·담)의 설치(변경)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개인 또는 가족불안묘 (탑·담)	1. 평면도 2. 불안묘(탑·담)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 3. 사용할 불안묘(탑·담)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(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
	종중 또는 문중불안 묘 (탑·담), 종교단체의 불안묘 (탑·담)	1. 불안묘(탑·담)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·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,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실측도 및 구적도 3. 불안묘(탑·담)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 4. 사용할 불안묘(탑·담)의 토지가 종중·문중,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.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
	법인불안묘 (탑·담)	1. 법인의 정관·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. 실측도 및 구적도 3. 사용할 불안묘(탑·담)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불안묘(탑·담) 조성사업비,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. 상하수도, 조경, 전기통신, 도로,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. 불안묘(탑·담) 조성 및 공정계획서,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(배치도·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) 7.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1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불안묘·가족불안탑·가족불안담만 해당합니다) 2. 토지(임야)대장 3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. 지적도 및 임야도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